

2025년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안내

1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 사업 ?

-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
(사업참여일 기준 만 60세 이상: 1965년생 및 이전출생자)

2 참여대상

1) 참여자

- 일반형 참여자: 만 60세 이상 자
- 세대통합형 참여자: 만 60세 이상의 숙련기술 보유자로 유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해당 업종 관련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계약 필요

○ 참여제외

- 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 예시)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 ②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참여 직전 90일 중 일용직으로 근로일 30일 이하 근무한 경우 제외
 - 세대통합형의 경우,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 취업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참여 제외 조건 예외적용
- ③ 당해연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 ④ 인턴십 참여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
 -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중 일용직으로 근로일 30일 이하 근무한 경우 제외
 - 인턴 시작일 이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의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사실 관계 파악(상실 신고 내역 등 확인 및 증빙) 후 참여 가능
 - * 인턴십 참여 중 4대 보험을 이중 취득한 경우(인턴십 참여기간 중 근로일 30일 이하 일용직제외) 부적격자로 관리
- ⑤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
 - 인턴십 참여시작 연도기준 5년이 경과한 경우 재참여 가능
- ⑥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 인턴기간 중도해지자는 1회에 한해 1개월 이상의 잔여기간 동안 재참여 가능
- ⑦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대표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⑧ 인턴십 참여 전 3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알선형 참여 사실이 있는 자
- ⑨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
 -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2) 참여기업

- 참여기업요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참여자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
 - ※ 단, 기업 여건상 4대 보험 가입 요건이 일부 미충족 되는 사업장의 경우, 가입 요건이 충족되는 보험의 가입내역과 미충족 사유 제출 후 인정 시 참여 가능
- 참여자에 대해 1년 이상 장기고용의사가 있는 기업 및 계속 고용률이 높은 기업을 우선 지원
- 참여 제외 기업 및 직종

<참여 제외 기업>

- ①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 ②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 ③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 ※ 단, 일자리 창출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할 수 있음
 - ※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후 지원·관리기간이 종료된 경우 참여 가능
 - ※ 고령자 고용지원금, 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 등 기금 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 산정기간이 중복될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가능
- ④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 ⑤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참여 제외 직종>

- 제외 직종(58개 직종) : 국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기업 고위임원, 정부행정 관리자, 법률·경찰·소방·교도관리자, 경비·청소관리자,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회계사·세무사·감정전문가, 조세행정·관세행정·국가지방행정 사무원, 대학교수 및 강사 2개 직종, 학교 교사 3개 직종,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전문가, 법률전문가 5개 직종, 시민단체 활동가,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2개 직종, 경찰관·소방관 및 교도관 3개 직종, 군인 4개 직종, 의사 5개 직종, 약사 및 한약사, 레크리에이션강사 및 기타 관련 전문가, 점술가 및 민속신앙 종사원, 경호·보안 종사자 4개 직종, 경비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가사도우미, 제품·광고 영업원, 기타 기술 영업·중개 종사원, 온라인 판매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방문 판매원, 항공기 조종사, 선장·항해사 및 도선사, 우편집배원

* 일용직 및 건설 일용근로 형태는 제외

**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국가바우처 사업에 참여중인 일자리는 참여 제외

*** 파견직은 참여제외(단, 수행기관 위탁없이 개발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 심의 후 참여가능)

**** 일부 직종은 직업 예시까지 세분화하여 참여 가능 여부 관리(세부내용 부록참조)

세분류 직업명		제외여부	적용기준
0139	부동산·조사·인력알선 및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조건부 제외	관리소장은 참여가능 조건 충족 시 참여 허용
5230	숙박시설 서비스원		룸메이드는 참여 제외
6229	기타 자동차 운전원		대리운전기사는 참여 제외
6212	선장, 항해사 및 도선사	제외 (조건부 허용)	항해사 참여 허용

구분	참여기업 지원금		
	총액	지원금 형태	지원내용
일반형	1인당 최대 <u>270만원</u> 지원	인턴 지원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채용 지원금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세대 통합형	1인당 <u>300만원</u> 지원	채용 지원금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장기취업 유지형	1인당 최대 <u>280만원</u> 지원	장기 취업 유지 지원금	•인턴십 사업으로 <u>일정기간</u> 이상 고용한 경우, <u>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총 4회)</u> *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기업에 한해 지원

구분	2024	2025
사업목적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60세 이상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 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 도모 ○ (사업정의) 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 (사업운영안내 목적) 본 사업 안내는 「2024년 시니어인턴십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각 참여 주체의 역할과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 사업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60세 이상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 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 도모 ○ (사업정의) 60세 이상자의 <u>취업지원을</u>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 (사업운영안내 목적) 본 사업 안내는 <u>2025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 사업</u>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각 참여 주체의 역할과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 사업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사업추진 근거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자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자리법 제10조(취업 지원 등)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일자리 현장적응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 노인일자리법 시행령 제7조(현장실습 훈련 지원 기준 등)
용어의 정의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니어인턴십 사업”(이하 “인턴십”)이라 함은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령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신규 및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u>”(이하 “시니어인턴십”, “인턴십”)이라 함은 노인일자리법 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u>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u>”으로 60세 이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고령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신규 및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구분	2024	2025																																						
추진개요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정의) 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 (추진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정의) 60세 이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 (추진근거) 노인일자리법 제10조(취업 지원 등)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현장 실습 훈련 지원의 기준 등) 																																						
추진개요 (5p)	<p>○ (지원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325 548 858 1025"> <thead> <tr> <th rowspan="2">지원 유형</th> <th colspan="3">지원내역</th> </tr> <tr> <th>수행기관 위탁운영비</th> <th>지원금 채용성 공보수</th> <th>참여기업 지원금</th> </tr> </thead> <tbody> <tr> <td>일반형</td> <td>1인당 30만원</td> <td>1인당 최대 20만원</td> <td>(월 최대 40만원, 최대 6개월)</td> </tr> <tr> <td>세대통합형</td> <td>1인당 30만원</td> <td>1인당 최대 20만원</td> <td>1회 300만원</td> </tr> <tr> <td>장기취업유지형</td> <td>-</td> <td>-</td> <td>1인당 최대 280만원</td> </tr> </tbody> </table>	지원 유형	지원내역			수행기관 위탁운영비	지원금 채용성 공보수	참여기업 지원금	일반형	1인당 30만원	1인당 최대 20만원	(월 최대 40만원, 최대 6개월)	세대통합형	1인당 30만원	1인당 최대 20만원	1회 300만원	장기취업유지형	-	-	1인당 최대 280만원	<p>○ (지원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882 548 1415 1025"> <thead> <tr> <th rowspan="2">지원 유형</th> <th colspan="3">지원내역</th> </tr> <tr> <th>수행기관 위탁운영비</th> <th>지원금 채용성 공보수</th> <th>참여기업 지원금</th> </tr> </thead> <tbody> <tr> <td>일반형</td> <td>1인당 30만원</td> <td>1인당 최대 20만원</td> <td>(인턴지원금) 월 최대 40만원, 최대 3개월 (채용지원금) 월 최대 50만원, 최대 3개월</td> </tr> <tr> <td>세대통합형</td> <td>1인당 30만원</td> <td>1인당 최대 20만원</td> <td>1회 300만원</td> </tr> <tr> <td>장기취업유지형</td> <td>-</td> <td>-</td> <td>1인당 최대 280만원</td> </tr> </tbody> </table>	지원 유형	지원내역			수행기관 위탁운영비	지원금 채용성 공보수	참여기업 지원금	일반형	1인당 30만원	1인당 최대 20만원	(인턴지원금) 월 최대 40만원, 최대 3개월 (채용지원금) 월 최대 50만원, 최대 3개월	세대통합형	1인당 30만원	1인당 최대 20만원	1회 300만원	장기취업유지형	-	-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유형	지원내역																																							
	수행기관 위탁운영비	지원금 채용성 공보수	참여기업 지원금																																					
일반형	1인당 30만원	1인당 최대 20만원	(월 최대 40만원, 최대 6개월)																																					
세대통합형	1인당 30만원	1인당 최대 20만원	1회 300만원																																					
장기취업유지형	-	-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유형	지원내역																																							
	수행기관 위탁운영비	지원금 채용성 공보수	참여기업 지원금																																					
일반형	1인당 30만원	1인당 최대 20만원	(인턴지원금) 월 최대 40만원, 최대 3개월 (채용지원금) 월 최대 50만원, 최대 3개월																																					
세대통합형	1인당 30만원	1인당 최대 20만원	1회 300만원																																					
장기취업유지형	-	-	1인당 최대 280만원																																					
수행기관자격요건 (8p)	<p>수행기관 자격요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②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지자체 위탁 노인취업지원기관(센터) 등 ③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 소개소 ④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 제공사업자 ⑤ 전경련,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지부, 산하단체 ⑥ 기업(직능별) 협회 또는 협동조합, 기업지원단체 및 기업주 단체 등 ⑦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및 단체 등 	<p>수행기관 자격요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②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지자체 위탁 노인취업지원기관(센터) 등 ③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 소개소 ④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한 유료직업 소개소 ⑤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 제공사업자 ⑥ 전경련,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지부, 산하단체 ⑦ 기업(직능별) 협회 또는 협동조합, 기업지원단체 및 기업주 단체 등 ⑧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및 단체 등 																																						
참여기업모집 및 관리 (11p)	<p><참여 제외 기업></p> <table border="1" data-bbox="325 1904 850 2011"> <tr> <td>①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td> </tr> <tr> <td>②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td> </tr> </table>	①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②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p><참여 제외 기업></p> <table border="1" data-bbox="882 1904 1410 2011"> <tr> <td>①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td> </tr> <tr> <td>②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td> </tr> </table>	①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②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①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②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①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②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구분	2024	2025
	<p>③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일자리 창출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할 수 있음 ※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후 지원·관리기간이 종료된 경우 참여 가능 <p>④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 없는 기업</p> <p>⑤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p>	<p>③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일자리 창출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할 수 있음 ※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후 지원·관리기간이 종료된 경우 참여 가능 ※ <u>고령자 고용지원금, 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 등 기금 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 산정기간이 중복될 경우를 제외</u>하고 지원가능 <p>④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 없는 기업</p> <p>⑤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p>
<p>실행계획 수립 (14p)</p>	<p>○ (실행계획 신청) 수행기관은 참여기업과 협약 후 사업실행계획을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을 통해 개발원에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업별로 별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업 신청서와 참여기업과 체결한 협약서를 포함 - 수행기관은 신청기업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신청기업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기업 또는 자격요건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 가능 - 참여기업 실행계획서에 대한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상 심의요청일을 기준으로 이미 해당기업에 취업한 60세 이상자(일반형)는 참여 불가 <p>※ 단, 업무시스템 장애 등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개발원 공문 필요)</p>	<p>○ (실행계획 신청) 수행기관은 참여기업과 협약 후 사업실행계획을 <u>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u>을 통해 개발원에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업별로 별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업 신청서와 참여기업과 체결한 협약서를 포함 - 수행기관은 신청기업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신청기업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기업 또는 자격요건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 가능 - 참여기업 실행계획서에 대한 <u>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상</u> 심의요청일을 기준으로 이미 해당기업에 취업한 60세 이상자(일반형)는 참여 불가 <p>※ 단, <u>정보시스템</u> 장애 등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개발원 공문 필요)</p> <p>※ 단, <u>심의요청일과 참여 시작일이 동일한 날인 경우 참여 가능</u></p>
<p>참여자 모집 및 관리 (15p)</p>	<p>○ (참여자 요건) 60세 이상으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p> <p>※ 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의 교육이 제한되는</p>	<p>○ (참여자 요건) 60세 이상으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p> <p>※ 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의 교육이 제한되는</p>

구분	2024	2025
	<p>경우 참여기업에서 진행하는 교육으로 대체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형 참여자) 60세 이상 자 - (세대통합형 참여자) 60세 이상의 숙련기술 보유자로 유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해당 업종 관련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p>※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계약 필요</p>	<p>경우 참여기업에서 진행하는 교육으로 대체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형 참여자) 60세 이상 자 - (세대통합형 참여자) 60세 이상의 숙련기술 보유자로 유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해당 업종 관련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p>※ 청년(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최대 3년 연장 가능))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계약 필요</p>
<p>참여자 교육 (17p)</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디지털 직무교육) 노인일자리법 시행령 7조 교육지원의 일환으로 디지털 직무분야 교육과정(소양·안전·직무·디지털교육 등)을 개발하여, 참여자를 모집·교육 수료 후 인턴십 연계 시, 수행기관 위탁운영비 추가지원가능</u> <p>※ <u>디지털·직무교육 등을 포함한 20시간 교육과정으로 운영(온라인교육 50%이내, 개발원사전 승인)</u></p>
<p>참여자 근무조건 및 근무관리 (19p)</p>	<p>○ (약정기간) 일반형 인턴 약정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서 당사자 간 약정으로 하되, 약정체결 이후에도 기업 사정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약정기간을 단축 가능(최소 1개월 이상)</p>	<p>○ (약정기간) 일반형 인턴 약정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서 당사자 간 약정으로 하되, 약정체결 이후에도 기업 사정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약정기간을 단축 가능(당해연도 1개월 이상 근무)</p>
<p>참여자 근무조건 및 근무관리 (19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사고 발생 시 수행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수행기관은 사고 발생내역 및 산재처리 여부 등을 업무시스템을 통해 입력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사고 발생 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수행기관은 사고 발생내역 및 산재처리 여부를 관리

구분	2024	2025
<p>참여자 근무조건 및 근무관리 (22p)</p>	<p>관리 필수</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마. 고충처리 관리 강화</p> <p>○ (고충처리 관리) 개발원은 참여자가 근무 중 겪을 수 있는 부당행위, 애로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신고센터 운영 가능</p> <p>- 참여기업의 부당행위 등에 대해 고충이 접수된 경우 수행기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개발원은 현장조사 실시 가능</p> <p>- 참여기업은 부당행위 등 참여자의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하며, 현장조사가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해 적극협조</p>
<p>수행기관 지원금 관리 (25p)</p>	<p>○ (지원수준) 개발원은 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참여자 1인당 30만원의 위탁운영비 지급</p> <p>- 단 참여자 월 급여액이 60만원 미만일 경우 위탁운영비 미지급(중도포기자 제외)</p>	<p>○ (지원수준) 개발원은 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참여자 1인당 30만원의 위탁운영비 지급</p> <p>- 단 참여자 월 평균 급여액이 60만원 미만일 경우 위탁운영비 미지급(중도포기자 제외)</p> <p>- 위탁기간 만료, 사업 중도포기 등 기존 수행기관의 참여자 실적을 타 수행기관으로 이관하여 잔여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후관리가 필요할 경우, 참여자 1인당 5만원 위탁운영비 지급 가능</p>
<p>참여기업 지원금 지급 및 관리(수행기관→참여기업) (30p)</p>	<p>- (채용지원금) 참여기업이 약정기간 종료 후 해당연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을 체결하고 해당 참여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간 월 급여의 50%, 최대 월 40만원 지원</p>	<p>- (채용지원금) 참여기업이 약정기간 종료 후 해당연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을 체결하고 해당 참여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간 월 급여의 50%, 최대 월 50만원 지원</p>
<p>참여기업 지원금 지급 및 관리(수행기관→참여기업) (32p)</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수령 후 4대 보험 이종 가입이 확인 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p> <p>※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p>

구분	2024	2025														
부적격 및 부정수급 관리 (3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 수급한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그 부정수급 적발일로부터 5년간 인턴십 참여를 금지 ·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인턴십 참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업) 보조금을 부정하게 신청, 수급·집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적발일로부터 5년간 인턴십 참여 금지, 부정수급액 <u>전액 환수</u>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 점검 (3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 실시) 수행기관은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에 대하여 당해연도 내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서식18) - 자체 점검계획에 의거 대면·비대면 점검이 가능하나, 전체 참여기업의 50% 이상은 대면점검 실시 (단, 신규기업은 대면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 실시) 수행기관은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에 대하여 당해연도 내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서식18) - 자체 점검계획에 의거 대면·비대면 점검이 가능하나, 전체 참여기업의 <u>30% 이상은 대면점검 실시(단, 신규기업 중 3인 이상 채용 기업은 대면점검 실시)</u> 														
개인정보보호 의무 (43p)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노인일자리법 시행령 제14조														
개발원 직접사업 추진 (44p)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원 직접운영 시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개발원과 협약체결 한 경우, 수행기관 협약체결을 통해 별도 참여 가능 														
114P	<p>[부록] 직종분류표</p> <table border="1" data-bbox="323 1675 874 1998"> <thead> <tr> <th colspan="2">세분류 직업명</th> </tr> </thead> <tbody> <tr> <td>(0139) 부동산·조사·인력알선 및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td> <td>조건부 제외</td> </tr> <tr> <td>(5230) 숙박시설 서비스원</td> <td>조건부 제외</td> </tr> <tr> <td>(6229) 기타 자동차 운전원</td> <td>조건부 제외</td> </tr> <tr> <td>(6212) 선장, 항해사 및 도선사</td> <td>제외(조건부 허용)</td> </tr> </tbody> </table>	세분류 직업명		(0139) 부동산·조사·인력알선 및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조건부 제외	(5230) 숙박시설 서비스원	조건부 제외	(6229) 기타 자동차 운전원	조건부 제외	(6212) 선장, 항해사 및 도선사	제외(조건부 허용)	<p>[부록] 직종분류표</p> <table border="1" data-bbox="880 1706 1428 1827"> <thead> <tr> <th colspan="2">세분류 직업명</th> </tr> </thead> <tbody> <tr> <td>(6212) 조경원</td> <td>허용</td> </tr> </tbody> </table>	세분류 직업명		(6212) 조경원	허용
세분류 직업명																
(0139) 부동산·조사·인력알선 및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조건부 제외															
(5230) 숙박시설 서비스원	조건부 제외															
(6229) 기타 자동차 운전원	조건부 제외															
(6212) 선장, 항해사 및 도선사	제외(조건부 허용)															
세분류 직업명																
(6212) 조경원	허용															

구분	2024	2025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관련서식(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경) [서식 1]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수행기관 참여신청서 ○(변경) [서식 2]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운영계획서(수행기관용) ○(변경) [서식 4]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운영위탁계약서 ○(변경) [서식 6]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변경) [서식 7] 세대통합형 참여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변경) [서식 8]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지원 협약서 ○(변경) [서식 9]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변경) [서식 10]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변경) [서식 11]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약정서 ○(변경) [서식 12]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표준 근로계약서 ○(변경) [부록] 직종 분류표(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5 문의 및 접수처

- 세종상공회의소 회원사업팀
TEL. 070-7780-2440
E-Mail. sccisenior@naver.com
adress.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003 펠리체타워3, 5층
- 세종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http://sejongcci.korcham.net>